

군산시 공고 제2015-1417호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서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법령 변경(안 제3조)
 -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정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공무원노조계)
- 전 화 : 063)454-2263, FAX : 454-2229,
- 전자우편 : skm197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공무원노조계
(전화 454-22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를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 다만, 다음 각호의1 에”를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장이 5급이하”를 “기관장이 5급 이하”로, “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을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소·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를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지휘·감독의”를 “지휘·감독의”로, “관련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을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단순업무”를 “단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당해”를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해당”으로,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를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로, “이를 공고 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 이 경우”를 “. 이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기관에 2이상”을 “해당 기관에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되, 협의회”를 “의하되, 협의회”로,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내”를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설립중 이라”를 “설립중”이라”로, “. 다만,”을 “. 다만,”으로, “등 첨부서류”를 “등 첨부서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을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제출한 때에”를 “제출하였을 때”로 하며, “도달한”을 “도달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으로, “제명의결”을 “제명의결”로, “의결전”을 “의결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으로,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제8조제5항 본문 중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을 “.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이하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을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으로, “및 회원명부등”을 “및 회원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 사실과”를 “, 사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이를 공개”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호”로, “이를 각각”을 “각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이내에 이를”을 “3일 이내에”로,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을 “대해서는 반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근무시간중”을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u></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u>4급이상</u>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u>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u></p> <p>2. <u>기관장이 5급이하</u>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기관장이 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u>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u></p>	<p><u>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u>법</u>"이라 한다) <u>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u> ----- -----<u>4급 이상</u> ----- ----- -----<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 ----- ----- 1. <u>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u> ----- ----- 2. <u>기관장이 5급 이하 -----</u> ----- ----- -----<u>5급 이</u> <u>상 공무원 또는 이 -----</u> ----- ----- ② <u>제1항에 따른 둘 이상 -----</u></p>

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소·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소·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

각 호 -----.

1. 지휘·감독의 -----

-----관련 규정에 따라 -----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 7. (생략)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

-----공무원
(자료정리·타자 등 -----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단순 업무 -----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

-----공고하여야 -. 이 경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회의 설립)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이하 설립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
-----.

제4조(협회의 설립) ① -----

-----7일 이상-----
-----.

② ----- 해당 기관에 둘 이상 -----

-----.

③ -----

-----의하되, 협회의 -----
----- 제5조 -----

-----.

④ -----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

-----"설립증"이라 -----
-----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

-----등 첨부서류-----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규정) -----

-----각 호-----

-----.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협의회 규정-----

-----제출하였을 때-----
-----.
-----도달하였을-----

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

④ -----

-----해당-----

-----.

⑤ 제4항에 따른 -----

-----.

⑥ -----

-----해당-----
-----.
-----해당-----

-----.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 -----
-----제명
의결 -----

-----의결 전-----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협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 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생략)

⑤ 협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해당-----

-----.

② -----

-----협회 규정-----
-----.

③ -----

-----각 호-----

-----.

1. 협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 -----
-----1명 이상-----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현행과 같음)

⑤ -----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설립 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

-----남은 임기 --.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이하인-----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소속 공무원 중 -----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 -----
----- 및 회원명부 등 -----
-----.

② 제1항에 따라 -----, 사실과 -----
-----.

③ -----제2항에 따른 -----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
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를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2조(협회의 의무)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
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
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
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
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
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공개-----
-----.

⑥ -----
--사무기록-----

-----.

⑦ -----

-----각호-----
-----각
각-----.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협회의 의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

-----3일
이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근무시간 중 -----
-----.

군산시 공고 제2015 - 1421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의원정수 및 구성 등

- 어린이·청소년 의회 정수(안 제3조)
- 매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기준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다. 의원 임기 및 의장단 구성

- 의원 임기 및 사퇴의 경우(안 제7조)
-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방법(안 제8조 ~ 제9조)
- 연간 회의 일정 및 운영(안 제10조)

라. 시 및 시의회의 지원 등

- 시 및 시의회의 지원사항(안 제12조 ~ 13조)
- 시장의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등(안 제14조)

3. 관련법령

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12조

4.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어린이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4172, 팩스 063-454-4159, 전자우편 sonzo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지원계

(전화 063-454-4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의원정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전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

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455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23.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가로수 조성협의 등에 관한 사항
- 다.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

3. 관련법령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라. 도로법 69조부터 71조, 91조, 94조

마.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91조 제134조의 6

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 의견제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전화 063-454-2973, 팩스 063-454-2949, 전자우편 clair81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

(전화 063-454-2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 도심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는 법에 따른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기준) 법에서 정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법에 따른다.

제5조(식재 기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산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간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키 큰나무(교목)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여건 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 보전과 교통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며, 키큰나무(교목)는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활착율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큰나무(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키작은나무(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어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방근시설 등의 확대 필요성 검토
5. 그 밖에 관련 법령·조례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

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 실시 전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뀌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별표3 기준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

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가로수 및 녹지대 내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가로수 관리대장의 작성 등)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에 의한 가로수 노선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공고 제2015 - 1462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
(안 제4조)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중전 조례) ⇒ 10조문(전부개정조례 안) 으로 구성

다.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다.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군산시청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세심의 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군산시공고 제2015 - 1463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을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을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함
-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조항 삭제
99조문(종전 시행규칙) ⇒ 25조문(전부개정규칙 안) 으로 구성
- 다.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및 징수결정 (안 제5조 ~ 제7조)
- 라. 납세고지서 작성 및 납기마감 처리 등 (안 제8조 ~ 제10조)
- 마. 부과 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안 제11조 ~ 제12조)

- 바.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미수납액의 이월 등 (안 제13조 ~ 제15조)
- 사. 시세 환급 처리, 지급, 충당, 통지 등 (안 제16조 ~ 제19조)
- 아. 납세담보 범위,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 (안 제20조 ~ 제24조)
- 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안 제25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군산시청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

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

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세 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매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 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시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총당) 영 제64조에 따라 총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2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6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7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8	수납부	
9	징수부	
10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11	이월 체납액 정리부	
12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13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14	지방세 체납정리표	
15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6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17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18	배분금전예탁통지서	
19	배분계산서	
20(갑)	결손처분표	
20(을)	결손처분표	
21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징수
 감액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외 번지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8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진화번호 세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부과금액 감액/결손 </div>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성 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측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u>주 거 확 인</u>			<u>재 산 확 인</u>	
1. 납세자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극빈자 확인</u>			<u>재조사 확인</u>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 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		재		지급필통지사항				
	년 도	책 호	세 목	환급대상자	과오남 연월일	사 유	담 당 자	담 당	조 정 장 연월일	지방세 환급금 가산금	지방세 환급 계	구좌 경정 번호	명령 지 급 명령액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수령 자	대조 자인
				계														
				월														
				연														
				총														

구 분	지방세환급 결의액	총 당 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 송 분 액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필통지액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		재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전월까지 누계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인)
		정	리	부	등	재	
담	당	총	당	통	지	서	(인)
		발	부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 입 항 목	구 분	세 입 연 도	세 입 과 목				환 급 금 총 액	과 오 납 연 월 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 세 번 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 분	세 입 연 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총 당 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 세 번 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 납 부 정 리	(인)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 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채권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납자	성명		납세자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	월	일	
<p>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인)</p>				
<p>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9호 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 소		채 권 금 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납세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 서식 (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년 월 일				
채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분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 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0호 서식 (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명	직업(업종)	총체납액	납기	체납요지
	상호	연령	세목		체납자주소
1					
2					

※ 상기 개인 납세자 등 ○명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업종	총체납액	납기	법인소재지
	대표자	연령	세목	체납요지	대표자주소
1					
2					

※ 상기 법인 납세자 등 ○개 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

군산시공고 제2015 - 1464호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조례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 나. '99년 이후 동일한 세율 적용에 따라 물가·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 2,000원, 동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안 제6조)
-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 사. 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군산시청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군산시공고 제2015 - 1465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을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조항 삭제
27조문(종전 시행규칙) ⇒ 22조문(전부개정규칙안)으로 구성
- 다.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처리 등 (안 제3조 ~ 제4조)
- 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 등 (안 제5조 ~ 제9조)
- 라.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 등 (안 제10조 ~ 제12조)
- 마.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등 (안 제13조 ~ 제16조)

바. 자동차세 분할납부 등 (안 제17조 ~ 제21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군산시청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 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

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

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3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4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5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6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8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9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0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1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16	건축물조사표	
17	주택조사표	
18	선박조사표	
19	항공기조사표	
20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21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22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23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24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고서	
25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26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27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28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9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OO시)

년도 월분

접수 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제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 X 257mm (일반용지 80g/m²)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〇〇시)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신출세 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제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 X 257mm (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일련번호

월별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결재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합계		담당 자	담당 과장			
		과세 인원 표준 인원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과세 인원 표준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월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전신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5호서식]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 무 서	세 율	본 세	가 산 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별 인 등 록 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 자			현 소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95px; width: 550px;"></div>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 자			현 소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00시)																		
접수번호	토지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남세주소	과포세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	1차 확인내 용	4차 확인내 용	7차 확인내 용	10차 확인내 용	11차 확인내 용	12차 확인내 용	담당자	과장							
	건물 면적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담당자	과장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m²)

*전신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전화번호(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연세액 신고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뒤 면)

작성요령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역	관 할 세무서	세울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군산시 공고 제 2015 - 1471호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 등에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잉여금의 처분용도를 배당납부금에 처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임(안 제16조)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 : 454-5353, 5402 FAX : 452-81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주무관 신승호(전화 454-53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321호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적립금”을 “감채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도과 수도계	
연 락 처	063-454-5353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p> <p>1. (생략)</p> <p>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u>적립금</u></p> <p>3. 1, 2호의 <u>규정에 따른 처분</u>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u>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금</u></p> <p>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u>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를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u></p>	<p>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감채적립금</u></p> <p>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u>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u></p> <p><삭제></p>

군산시 공고 제 2015-1481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7조)

-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 자치법규(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와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서 정보공개수수료로 변경

나.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에 관한 자료정비(별표 1)

- 기존의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과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

다. 사용료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자료정비(별표 2)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시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라. 정보공개수수료(안 제7조)에 관한 자료정비 (별표 3)

○ 기존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을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 : 063-454-2512 , FAX : 063-452-91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와 주무관 임정숙(전화 : 454-2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생략)</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행정정보공개수수료</u>는 50%를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정</u> <u>보공개수수료</u>-----.</p> <p>1. ~ 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 표[별표1]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p> <p>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 을 적용한다. ○ <u>형광류 및 네온을 이용한 벽면 광고물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적용한다.</u></p> <p>나. 요율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광고물의 종류</th> <th rowspan="2">기 준</th> <th colspan="2">단계별 요율</th> <th rowspan="2">허가기간</th> </tr> <tr> <th>읍면지역</th> <th>동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벽면광고물</td> <td rowspan="2">가로 간 판</td> <td>3.5㎡ 이상</td> <td>1,000원</td> <td>2,000원</td> <td rowspan="2">신 고 3 년</td> </tr> <tr> <td>4층이상 설치</td> <td>1,000원</td> <td>2,000원</td> </tr> <tr> <td rowspan="2">세 로 간 판</td> <td>—</td> <td>—</td> <td>—</td> <td>허가 배제</td> </tr> <tr> <td rowspan="2">돌출광고물</td> <td>3.5㎡ 미만</td> <td>10,000원</td> <td>15,000원</td> <td rowspan="2">허가 2년</td> </tr> <tr> <td>3.5㎡ 이상</td> <td>10,000원</td> <td>20,000원</td> </tr> <tr> <td>공 연 광 고 물</td> <td>허가 공연시</td> <td>3,000원</td> <td>4,000원</td> <td>허가공연종료시까지</td> </tr> <tr> <td rowspan="2">공공 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물</td> <td>1 개당</td> <td>500원</td> <td>500원</td> <td rowspan="2">허가 2년</td> </tr> <tr> <td colspan="4">※ 야립, 돌출, 대형광고물 특수한 경우 유사한 타광고물 수수료 적용</td> </tr> <tr> <td rowspan="2">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td> <td>50 개이하</td> <td>5,500원</td> <td>7,500원</td> <td rowspan="2">허가 2년</td> </tr> <tr> <td>50개초과 100개당</td> <td>11,000원</td> <td>15,000원</td> </tr> <tr> <td rowspan="2">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td> <td>내부좌석상단</td> <td>1대당 50개 기준</td> <td>5,000원</td> <td>7,500원</td> <td>허가 2년</td> </tr> <tr> <td>차량 양측면</td> <td>1 대당</td> <td>1,000원</td> <td>15,000원</td> <td>신고 2년</td> </tr> <tr> <td>지하철(역)광고물</td> <td>1 대당</td> <td>8,000원</td> <td>10,000원</td> <td>허가 2년</td> </tr> <tr> <td rowspan="2">지하도 광고물</td> <td>1개당 5㎡ 미만</td> <td>4,500원</td> <td>9,000원</td> <td rowspan="2">허가 2년</td> </tr> <tr> <td>1개당 5㎡ 이상</td> <td>5,000원</td> <td>10,000원</td> </tr> <tr> <td rowspan="5">기 타 광 고 물</td> <td>압간(선전탑이류등)</td> <td>1개소 당</td> <td>3,000원</td> <td>4,000원</td> <td>허가 20일</td> </tr> <tr> <td>현 수 막</td> <td>1 개당</td> <td>2,000원</td> <td>3,000원</td> <td>신고1월이내</td> </tr> <tr> <td>프 랑 카 드</td> <td>1 개당</td> <td>2,000원</td> <td>3,000원</td> <td>신고1월이내</td> </tr> <tr> <td>에 드 별 룬</td> <td>1 개당</td> <td>10,000원</td> <td>15,000원</td> <td>허가1월이내</td> </tr> <tr> <td>시내버스광고물</td> <td>3.5m 이상</td> <td>1,000원</td> <td>2,000원</td> <td>신고2년</td> </tr> </tbody> </table>	광고물의 종류	기 준	단계별 요율		허가기간	읍면지역	동 지역	벽면광고물	가로 간 판	3.5㎡ 이상	1,000원	2,000원	신 고 3 년	4층이상 설치	1,000원	2,000원	세 로 간 판	—	—	—	허가 배제	돌출광고물	3.5㎡ 미만	10,000원	15,000원	허가 2년	3.5㎡ 이상	10,000원	20,000원	공 연 광 고 물	허가 공연시	3,000원	4,000원	허가공연종료시까지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물	1 개당	500원	500원	허가 2년	※ 야립, 돌출, 대형광고물 특수한 경우 유사한 타광고물 수수료 적용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	50 개이하	5,500원	7,500원	허가 2년	50개초과 100개당	11,000원	15,000원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내부좌석상단	1대당 50개 기준	5,000원	7,500원	허가 2년	차량 양측면	1 대당	1,000원	15,000원	신고 2년	지하철(역)광고물	1 대당	8,000원	10,000원	허가 2년	지하도 광고물	1개당 5㎡ 미만	4,500원	9,000원	허가 2년	1개당 5㎡ 이상	5,000원	10,000원	기 타 광 고 물	압간(선전탑이류등)	1개소 당	3,000원	4,000원	허가 20일	현 수 막	1 개당	2,000원	3,000원	신고1월이내	프 랑 카 드	1 개당	2,000원	3,000원	신고1월이내	에 드 별 룬	1 개당	10,000원	15,000원	허가1월이내	시내버스광고물	3.5m 이상	1,000원	2,000원	신고2년	<p>[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p> <p>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하되, <u>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적용한다.</u>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p> <p>나. 요율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광고물의 종류</th> <th>기 준</th> <th>수수료</th> <th>표시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가 로 형 간 판</td> <td>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td> <td>면적 6㎡ 이하</td> <td>3,000 원</td> <td rowspan="4">3년 이내</td> </tr> <tr> <td></td> <td>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 원</td> </tr> <tr> <td>2) 도 조래 재조제 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관류형으로 한정한다)</td> <td>면적 6㎡ 이하</td> <td>30,000 원</td> </tr> <tr> <td></td> <td>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td> </tr> <tr> <td rowspan="2">세 로 형 간 판</td> <td>면적 6㎡ 이하</td> <td>2,000 원</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 원</td> </tr> <tr> <td rowspan="2">돌 출 간 판</td> <td>면적 6㎡ 이하</td> <td>15,000 원</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 원</td> </tr> <tr> <td rowspan="2">공 연 간 판</td> <td>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td> <td>4,000 원</td> <td rowspan="2">2년 이내</td> </tr> <tr> <td>가로형간판 1)과 같음</td> <td></td> </tr> <tr> <td rowspan="2">옥 상 간 판</td> <td>연면적 10㎡ 이하</td> <td>35,000 원</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5,000 원</td> </tr> <tr> <td rowspan="2">지 주 이 용 간 판</td> <td>연면적 10㎡ 이하</td> <td>15,000 원</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2,000 원</td> </tr> <tr> <td rowspan="3">에 드 별 룬</td> <td>공중에 띄우는 것(1개)</td> <td>15,000 원</td> <td>60일 이내</td> </tr> <tr> <td>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td> <td>옥상간판에 준함</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지면에 설치하는 것</td> <td>지구이용 간판에 준함</td> </tr> <tr> <td rowspan="2">벽 보 전 단</td> <td>50매당</td> <td>3,000 원</td> <td>15일 이내</td> </tr> <tr> <td>1,000매당</td> <td>3,000 원</td> <td>15일 이내</td> </tr> <tr> <td rowspan="2">공 공 시 설 물 이 용 광 고 물</td> <td>연면적 1㎡ 이하</td> <td>3,000 원</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 원</td> </tr> <tr> <td rowspan="2">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td> <td>1개당 5㎡ 미만</td> <td>9,000 원</td> <td rowspan="2">3년 이내</td> </tr> <tr> <td>1개당 5㎡ 이상</td> <td>10,000 원</td> </tr> <tr> <td rowspan="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td> <td>비행선</td> <td>400,000 원</td> <td rowspan="3">3년 이내</td> </tr> <tr> <td>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td> <td>10,000 원</td> </tr> <tr> <td>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td> <td>2,000 원</td> </tr> <tr> <td rowspan="2">선전탑 및 야지광고물(1개)</td> <td>-</td> <td>4,000 원</td> <td>30일 이내</td> </tr> <tr> <td rowspan="4">현 수 막</td> <td>현 수 막</td> <td>10㎡ 이하</td> <td>3,000 원</td> </tr> <tr> <td></td> <td>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 원</td> </tr> <tr> <td>현 수 막</td> <td>10㎡ 이하</td> <td>7,000 원</td> </tr> <tr> <td>게시시설</td> <td>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500 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의 종류	기 준	수수료	표시기간	가 로 형 간 판	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면적 6㎡ 이하	3,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2) 도 조래 재조제 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관류형으로 한정한다)	면적 6㎡ 이하	30,000 원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세 로 형 간 판	면적 6㎡ 이하	2,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돌 출 간 판	면적 6㎡ 이하	15,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공 연 간 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 원	2년 이내	가로형간판 1)과 같음		옥 상 간 판	연면적 10㎡ 이하	35,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 원	지 주 이 용 간 판	연면적 10㎡ 이하	15,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 원	에 드 별 룬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 원	60일 이내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년 이내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구이용 간판에 준함	벽 보 전 단	50매당	3,000 원	15일 이내	1,000매당	3,000 원	15일 이내	공 공 시 설 물 이 용 광 고 물	연면적 1㎡ 이하	3,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1개당 5㎡ 미만	9,000 원	3년 이내	1개당 5㎡ 이상	10,000 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400,000 원	3년 이내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 원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 원	선전탑 및 야지광고물(1개)	-	4,000 원	30일 이내	현 수 막	현 수 막	10㎡ 이하	3,000 원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현 수 막	10㎡ 이하	7,000 원	게시시설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 원
광고물의 종류			기 준	단계별 요율		허가기간																																																																																																																																																																																																					
	읍면지역	동 지역																																																																																																																																																																																																									
벽면광고물	가로 간 판	3.5㎡ 이상	1,000원	2,000원	신 고 3 년																																																																																																																																																																																																						
		4층이상 설치	1,000원	2,000원																																																																																																																																																																																																							
	세 로 간 판	—	—	—	허가 배제																																																																																																																																																																																																						
		돌출광고물	3.5㎡ 미만	10,000원	15,000원	허가 2년																																																																																																																																																																																																					
3.5㎡ 이상	10,000원		20,000원																																																																																																																																																																																																								
공 연 광 고 물	허가 공연시	3,000원	4,000원	허가공연종료시까지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물	1 개당	500원	500원	허가 2년																																																																																																																																																																																																							
	※ 야립, 돌출, 대형광고물 특수한 경우 유사한 타광고물 수수료 적용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	50 개이하	5,500원	7,500원	허가 2년																																																																																																																																																																																																							
	50개초과 100개당	11,000원	15,000원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내부좌석상단	1대당 50개 기준	5,000원	7,500원	허가 2년																																																																																																																																																																																																						
	차량 양측면	1 대당	1,000원	15,000원	신고 2년																																																																																																																																																																																																						
지하철(역)광고물	1 대당	8,000원	10,000원	허가 2년																																																																																																																																																																																																							
지하도 광고물	1개당 5㎡ 미만	4,500원	9,000원	허가 2년																																																																																																																																																																																																							
	1개당 5㎡ 이상	5,000원	10,000원																																																																																																																																																																																																								
기 타 광 고 물	압간(선전탑이류등)	1개소 당	3,000원	4,000원	허가 20일																																																																																																																																																																																																						
	현 수 막	1 개당	2,000원	3,000원	신고1월이내																																																																																																																																																																																																						
	프 랑 카 드	1 개당	2,000원	3,000원	신고1월이내																																																																																																																																																																																																						
	에 드 별 룬	1 개당	10,000원	15,000원	허가1월이내																																																																																																																																																																																																						
	시내버스광고물	3.5m 이상	1,000원	2,000원	신고2년																																																																																																																																																																																																						
광고물의 종류	기 준	수수료	표시기간																																																																																																																																																																																																								
가 로 형 간 판	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면적 6㎡ 이하	3,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2) 도 조래 재조제 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관류형으로 한정한다)	면적 6㎡ 이하	30,000 원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세 로 형 간 판	면적 6㎡ 이하	2,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돌 출 간 판	면적 6㎡ 이하	15,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공 연 간 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 원	2년 이내																																																																																																																																																																																																								
	가로형간판 1)과 같음																																																																																																																																																																																																										
옥 상 간 판	연면적 10㎡ 이하	35,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 원																																																																																																																																																																																																									
지 주 이 용 간 판	연면적 10㎡ 이하	15,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 원																																																																																																																																																																																																									
에 드 별 룬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 원	60일 이내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년 이내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구이용 간판에 준함																																																																																																																																																																																																									
벽 보 전 단	50매당	3,000 원	15일 이내																																																																																																																																																																																																								
	1,000매당	3,000 원	15일 이내																																																																																																																																																																																																								
공 공 시 설 물 이 용 광 고 물	연면적 1㎡ 이하	3,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1개당 5㎡ 미만	9,000 원	3년 이내																																																																																																																																																																																																								
	1개당 5㎡ 이상	10,000 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400,000 원	3년 이내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 원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 원																																																																																																																																																																																																									
선전탑 및 야지광고물(1개)	-	4,000 원	30일 이내																																																																																																																																																																																																								
	현 수 막	현 수 막	10㎡ 이하	3,000 원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현 수 막		10㎡ 이하	7,000 원																																																																																																																																																																																																								
게시시설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 원																																																																																																																																																																																																								

신 · 구조문 대비 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3. 농수산 관계				3. 농수산 관계			
① <u>축사 표준설계도서</u> <u>발급신청</u>	<u>1매</u>	<u>300원</u>		<u><삭제></u>			
②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③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u>20,000원</u>		(라) 용제판매소	1건	<u>10,000원</u>	
⑥ 석유판매업 신고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u>20,000원</u>		(나) 판매소	1건	<u>10,000원</u>	
5. 건설 관계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①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 수면 점용허가		공사비의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 수면 점용허가		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 채취변경허가	1건	500원		⑤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 채취변경허가	1건	5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 보건사회 관계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의 개설 신고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의 개설 신고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1건	<u>25,000원</u> <u>(20,000원)</u>		<삭제>			
⑩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사항 변경	1건	<u>13,000원</u> <u>(10,000원)</u>		<삭제>			
⑪ 기타 유기장업 신고	1건	<u>25,000원</u> <u>(20,000원)</u>		<삭제>			
⑫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	1건	<u>13,000원</u> <u>(10,000원)</u>		<삭제>			
⑬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는 읍면 지역임	⑨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는 읍면 지역임
⑭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⑩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⑮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⑪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⑯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⑫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⑰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⑱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⑭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⑲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⑮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⑳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⑯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㉑ 시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⑰ 시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7. 문화관광체육관계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 등록	1건	<u>2,000원</u>		<삭제>			
②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 등록 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u>1,000원</u>		<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③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④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②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⑤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	1건	20,000원		<삭제>			
⑥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③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⑦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④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⑧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⑤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⑨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⑩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⑪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⑫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⑬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⑭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⑮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⑯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⑱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⑮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신 · 구조문 대비 표[별표3]

현행

개정안

[별표 31]

행정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중이출력물)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판·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중이출력물)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중이출력물)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중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중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중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중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중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교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하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적용한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나. 요율표

광고물의 종류		기준	수수료	표시기간
가로형 간판	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면적 6㎡ 이하	3,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면적 6㎡ 이하	30,000원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세로형 간판	면적 6㎡ 이하	2,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돌출간판	면적 6㎡ 이하	15,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표지등(개당)	4,000원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2년 이내	
옥상간판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지주이용간판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60일 이내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년 이내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벽보	50매당	3,000원	15일 이내	
전단	1,000매당	3,000원	15일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연면적 1㎡ 이하	3,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1개당 5㎡ 미만	9,000원	3년 이내	
	1개당 5㎡ 이상	10,000원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수 수 료	표 시 기 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400,000원	3년 이내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원	30일 이내
현 수 막	현 수 막	10m ² 이하	3,000원	15일 이내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현수막게시시설	10m ² 이하	7,000원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별표 2]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 기업자	1통	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	1통	200원	
④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1통	300원	
③ 수출실적	1통	300원	
④ 납품실적	1통	300원	
⑤ 건물사용	1통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	1통	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	1통	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 문서	1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토지 도면	1통	300원	
·건물 도면	1통	300원	
③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당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5,0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1필지	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건	200원	
⑦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필지	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1주택	800원	<1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필지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필지	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	1필지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필지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⑥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	1통	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	1통	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인가,허가,신고,건축 등록지정확인등)	1필지	800원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5,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1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변경허가	1건	500원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⑨ 용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1건	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⑯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 ()는
⑩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읍면지역임
⑪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 ()는
⑫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읍면지역임
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⑭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⑮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⑯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⑰ 사설모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②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 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연습장업 등록	1건	5,000원	
③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④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⑤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⑮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 어업권의 분할허가신청	1건	2,500원	
- 어업권의 변경허가신청	1건	3,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 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 육상해수양식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500원	
⑰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건	2,500원	
⑱ 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	1건	1,500원	
⑲ 어업신고	1건	1,500원	
⑳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㉑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㉒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㉓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3,000원	
㉔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㉕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3,000원	
㉖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㉗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㉘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㉙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⑩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어업)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공동어업)	1건	75,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8,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③⑪ 내수면어업법 19조			
- 내수면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③⑫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③⑬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③⑭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③⑮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③⑯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③⑰ 면허사항(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③⑱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원	
③⑲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④① 한시어업 허가 신청	1건	2,000원	
④②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④③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원	
④④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④⑤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④⑥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④⑦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④⑧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④⑨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④⑩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원	
④⑪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④⑫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④⑬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환경 관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 방법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 이내 :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p>※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	--	--

< 비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483호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41호,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개장 15일 전까지 고시(안 제4조)
- 나.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8조)

- 다.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안 제9조)
- 라.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15조)
- 마.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 관리 조례 폐지(부칙)

4. 입법예고기간 : 2015. 10. 01. ~ 2015. 10. 21.(20일간)

5. 법적근거

-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 (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
제10조
-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조

6.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해양관광계(☎063-454-3353)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장 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 063-454-3353, FAX : 063-454-332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 첨 부 :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되, 법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군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내용 및 범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폐수 등의 무단투기·유출 예방활동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4. 부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구성·운영
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사항 준수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대피명령의 준수

제8조(위탁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에서 고시한 해수욕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협의회 의견의 청취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시설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사용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군산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지
2. 수탁자의 지정·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4. 군산소방서장
5. 군산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
6.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7. 시 소속 공무원 : 경제항만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④ 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에서 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 시설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발취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난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위치·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해양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제10조(금지행위) 법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2.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방풍림(防風林),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체험시설

제9조(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군산시 고시 제 2015 - 120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6.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대지조성사업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식회사성산건설개발
 - 나. 대표자 : 이 인 순
 - 다.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0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57-3번지의외 6필지
 - 나. 사업부지 면적 : 10,124.00㎡
 - 다.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14필지
 - 라. 사업비 : 1,161,681천원
 - 마.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7년 7월
4. 설계도서 : 대지조성사업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15. 9. 15.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5 - 121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 및 산림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어린이공원(17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9	제59공원	어린이공원	지곡동 121-5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변경	61	제61공원	어린이공원	지곡동 388-2 일원	1,550	증)302	1,852	군산고210 (96.6.1)	면적 정정
기정	62	제62공원	어린이공원	당북리 산913-2 일원	1,980	-	1,98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3	제63공원	어린이공원	미룡동 434-8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변경	64	제64공원	어린이공원	미룡동 378-1 일원	1,670	감)403	1,267	군산고210 (96.6.1)	면적 정정
기정	65	제65공원	어린이공원	미룡동 산259 일원	1,920	-	1,92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6	제66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950-16 일원	2,310	-	2,31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7	제67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971-3 일원	1,530	-	1,53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8	제68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505-2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9	제69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802-22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70	제70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729-27 일원	2,520	-	2,52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변경	83	공원	어린이공원	개정면 통사리 579-15 일원	2,917	감)167.6	2,749.4	군산고76 (04.02.16)	면적 정정
기정	84	옥산공원	어린이공원	옥산리 6-5번지 일원	2,921	-	2,921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5	회현공원	어린이공원	회현면 대정리 21-1 일원	7,435	-	7,435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6	술산공원	어린이공원	술산리 383-10번지 일원	5,226	-	5,226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7	서수공원	어린이공원	서수리 318-1번지 일원	3,367	-	3,367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8	성산공원	어린이공원	고봉리 310-13 일원	2,891	-	2,891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나. 근린공원(4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0	대야공원	근린공원	지경리 산2 일원	21,000	증)2,745	23,745	전북고133 (77.7.20)	면적 정정
변경	31	동오공원	근린공원	산월리 463-6 일원	13,000	증)2,643	15,643	전북고133 (77.7.20)	면적 정정
변경	32	장산공원	근린공원	통사리 산134 일원	28,000	감)4,011	23,989	'69.2	면적 정정
변경	33	임피공원	근린공원	축산리 산182-2 일원	80,000	감)3,292	76,708	전북고478 (75.5.13)	면적 정정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 조서

1) 제59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59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840	-	-	20		
기반시설	소 계	416	416	-	-	-	
	도 로	416	416	-	-	-	
휴양시설	98	98	-	-	14		
유희시설	326	326	-	-	6		
녹 지	710	-	-	-	-		
공원시설율(%)						54.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5.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840	-	-	20	
기반 시설	소 계		416	416	-	-	-	
	도 로		416	416	-	-	-	
휴양 시설	소 계		98	98	-	-	14	
	가	휴게소	98	98	-	-	-	
	①	파고라	-	-	-	-	1	
	②	등의자	-	-	-	-	11	
	③	앉음벽	-	-	-	-	2	
유희 시설	소 계		326	326	-	-	6	
	나-1	어린이놀이터-1	265	265	-	-	-	
	나-2	어린이놀이터-2	61	61	-	-	-	
	④	숫대놀이터	-	-	-	-	1	
	⑤	숲속그네	-	-	-	-	1	
	⑥	숲속시소2인용	-	-	-	-	1	
	⑦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710	-	-	-	-	
	녹 지		710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총 점	비고
총 계				160	416				
산책로	소 계			160	416				
	-	1	2.0	27	54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2	
	-	2	3.0	31	99	진입로	소1-254	소2-591	
	-	3	2.5	39	102	진입로	산책로2	소2-595	
	-	4	1.3 ~ 3.2	48	130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3	
	-	5	2.0	15	31	진입로	산책로4	소2-591	

2) 제61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1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52	940	-	-	10		
기반시설	소 계	586	586	-	-	-	
	도 로	282	282	-	-	-	
	광 장	304	304	-	-	-	
휴양시설	226	226	-	-	9		
유희시설	128	128	-	-	1		
녹 지	912	-	-	-	-		
공원시설율(%)	50.8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9.2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52	940	-	-	10	
기반시설	소 계		586	586	-	-	-	
	도 로		282	282	-	-	-	
	가-1	진입광장-1	116	116	-	-	-	
	가-2	진입광장-2	188	188	-	-	-	
휴양시설	소 계		226	226	-	-	9	
	나	휴게소	226	226	-	-	-	
	㉠	정자	-	-	-	-	1	
	㉡	등의자	-	-	-	-	8	
유희시설	소 계		128	128	-	-	1	
	다	어린이놀이터	128	128	-	-	-	
	㉢	소망놀이대	-	-	-	-	1	
녹지	소 계		912	-	-	-	-	
	녹 지		912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88	282				
소 계				88	282				
산책로	-	1	1.5 ~ 6.0	84	273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2	
	-	2	1.5 ~ 2.5	4	9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산책로1	

3) 제62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2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80	785	-	-	21	
기반시설	소 계	597	597	-	-	-
	도 로	438	438	-	-	-
	광 장	159	159	-	-	-
휴양시설	94	94	-	-	16	
유희시설	94	94	-	-	5	
녹 지	1,195	-	-	-	-	
공원시설율(%)	39.6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0.4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80	785	-	-	21	
기반 시설	소 계		597	597	-	-	-	
	도 로		438	438	-	-	-	
	가-1	진입광장-1	132	132	-	-	-	
	가-2	진입광장-2	15	15	-	-	-	
	가-3	진입광장-3	12	12	-	-	-	
휴양 시설	소 계		94	94	-	-	16	
	나	휴게소	94	94	-	-	-	
	㉠	파고라	-	-	-	-	2	
	㉡	등의자	-	-	-	-	14	
유희 시설	소 계		94	94	-	-	5	
	다-1	어린이놀이터-1	56	56	-	-	-	
	다-2	어린이놀이터-2	38	38	-	-	-	
	㉢	짚와이어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4	
녹지	소 계		1,195	-	-	-	-	
	녹 지		1,195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63	438				
산책로	소 계			163	438				
	-	1	3.0	141	395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2.0	11	22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11	21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4) 제63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3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94	-	-	10		
기반시설	소 계	323	323	-	-	-	
	도 로	247	247	-	-	-	
	광 장	76	76	-	-	-	
휴양시설	120	120	-	-	8		
유희시설	151	151	-	-	2		
녹 지	956	-	-	-	-		
공원시설율(%)	38.3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1.7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94	-	-	10	
기반시설	소 계		323	323	-	-	-	
	도 로		247	247	-	-	-	
	가	진입광장	76	76	-	-	-	
휴양시설	소 계		120	120	-	-	8	
	나-1	휴게소-1	30	30	-	-	-	
	나-2	휴게소-2	90	90	-	-	-	
	㉠	파고라	-	-	-	-	2	
	㉡	등의자	-	-	-	-	4	
	㉢	앉음벽	-	-	-	-	2	
유희시설	소 계		151	151	-	-	2	
	다	어린이놀이터	151	151	-	-	-	
	㉣	소망놀이대	-	-	-	-	1	
	㉤	숫대그물놀이대	-	-	-	-	1	
녹지	소 계		956	-	-	-	-	
	녹 지		95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73	247				
산책로	소 계			73	247				
	-	1	2.5 ~ 6.0	58	186	연결로	소2-655	소2-654	
	-	2	2.8 ~ 3.8	15	61	연결로	진입광장	산책로1	

5) 제64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4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67	408	-	-	1	
기반시설	소 계	248	248	-	-	-	
	도 로	140	140	-	-	-	
	광 장	108	108	-	-	-	
휴양시설		160	160	-	-	1	
녹 지		859	-	-	-	-	
공원시설율(%)		32.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7.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67	408	-	-	1	
기반 시설	소 계		248	248	-	-	-	
	도 로		140	140	-	-	-	
	가-1	진입광장-1	54	54	-	-	-	
	가-2	진입광장-2	54	54	-	-	-	
휴양 시설	소 계		160	160	-	-	1	
	나	휴게소	160	160	-	-	-	
	㉠	정자	-	-	-	-	1	
녹지	소 계		859	-	-	-	-	
	녹 지		859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총 계				46	140				
산책로	소 계			46	140				
	-	1	3.0	46	14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6) 제65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5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20	654	-	-	11	
기반시설	소 계	453	453	-	-	-
	도 로	219	219	-	-	-
	광 장	234	234	-	-	-
휴양시설	92	92	-	-	7	
유희시설	109	109	-	-	4	
녹 지	1,266	-	-	-	-	
공원시설율(%)	34.1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5.9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20	654	-	-	11	
기반시설	소 계		453	453	-	-	-	
	도 로		219	219	-	-	-	
	가-1	진입광장-1	106	106	-	-	-	
	가-2	진입광장-2	128	128	-	-	-	
휴양시설	소 계		92	92	-	-	7	
	나	휴게소	92	92	-	-	-	
	㉠	정자	-	-	-	-	1	
	㉡	등의자	-	-	-	-	6	
유희시설	소 계		109	109	-	-	4	
	다-1	어린이놀이터-1	44	44	-	-	-	
	다-2	어린이놀이터-2	65	65	-	-	-	
	㉢	짚와이어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1,266	-	-	-	-	
	녹 지		1,26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총 계				91	219				
산책로	소 계			91	219				
	-	1	2.5	67	171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	2	2.0	24	48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7) 제66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6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10	1,295	-	-	24	
기반시설	소 계	678	678	-	-	-
	도 로	522	522	-	-	-
	광 장	156	156	-	-	-
휴양시설	122	122	-	-	15	
유희시설	495	495	-	-	9	
녹 지	1,015	-	-	-	-	
공원시설율(%)	56.1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3.9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10	1,295	-	-	24	
기반시설	소 계		678	678	-	-	-	
	도 로		522	522	-	-	-	
	가	진입광장	156	156	-	-	-	
휴양시설	소 계		122	122	-	-	15	
	나-1	휴게소-1	67	67	-	-	-	
	나-2	휴게소-2	55	55	-	-	-	
	㉠	파고라	-	-	-	-	2	
	㉡	등의자	-	-	-	-	8	
	㉢	앉음벽	-	-	-	-	5	
유희시설	소 계		495	495	-	-	9	
	다-1	어린이놀이터-1	305	305	-	-	-	
	다-2	어린이놀이터-2	190	190	-	-	-	
	㉣	장승놀이대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8	
녹지	소 계		1,015	-	-	-	-	
	녹 지		1,015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5	522				
산책로	소 계			95	522				
	-	1	3.0 ~ 6.0	77	412	진입로	중1-8	소3-423	
	-	2	5.0 ~ 7.7	18	110	연결로	진입광장	산책로1	

8) 제67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7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30	799	-	-	19	
기반시설	소 계	387	387	-	-	-
	도 로	255	255	-	-	-
	광 장	132	132	-	-	-
휴양시설	217	217	-	-	14	
유희시설	195	195	-	-	5	
녹 지	731	-	-	-	-	
공원시설율(%)	52.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7.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30	799	-	-	19	
기반시설	소 계		387	387	-	-	-	
	도 로		255	255	-	-	-	
	가-1	진입광장-1	55	55	-	-	-	
	가-2	진입광장-2	77	77	-	-	-	
휴양시설	소 계		217	217	-	-	14	
	나	휴게소	217	217	-	-	-	
	㉠	파고라	-	-	-	-	2	
	㉡	등의자	-	-	-	-	12	
유희시설	소 계		195	195	-	-	5	
	다-1	어린이놀이터-1	80	80	-	-	-	
	다-2	어린이놀이터-2	40	40	-	-	-	
	다-3	어린이놀이터-3	75	75	-	-	-	
	㉢	카나리아놀이대	-	-	-	-	1	
	㉣	짚와이어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731	-	-	-	-	
	녹 지		731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11	255				
산책로	소 계			111	255				
	-	1	2.0	29	58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3	
	-	2	2.0	21	44	연결로	산책로3	진입광장2	
	-	3	3.0	32	95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	4	2.0	29	58	연결로	휴양시설	휴양시설	

9) 제68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8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64	-	-	14	
기반시설	소 계	321	321	-	-	-
	도 로	236	236	-	-	-
	광 장	85	85	-	-	-
휴양시설	153	153	-	-	10	
유희시설	90	90	-	-	4	
녹 지	986	-	-	-	-	
공원시설율(%)	36.4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3.6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64	-	-	14	
기반시설	소 계		321	321	-	-	-	
	도 로		236	236	-	-	-	
	가-1	진입광장-1	40	40	-	-	-	
	가-2	진입광장-2	45	45	-	-	-	
휴양시설	소 계		153	153	-	-	10	
	나-1	휴게소-1	85	85	-	-	-	
	나-2	휴게소-2	68	68	-	-	-	
	㉠	파고라	-	-	-	-	3	
	㉡	등의자	-	-	-	-	7	
유희시설	소 계		90	90	-	-	4	
	다	어린이놀이터	90	90	-	-	-	
	㉢	숫대그물놀이대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986	-	-	-	-	
	녹 지		98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3	236				
산책로	소 계			93	236				
	-	1	2.0 ~ 3.0	17	41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2	
	-	2	2.0	40	8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 3.5	19	58	연결로	산책로1	진입광장2	
	-	4	3.5	17	57	연결로	산책로2	진입광장2	

10) 제69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9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781	-	-	12	
기반시설	소 계	362	362	-	-	-	
	도 로	362	362	-	-	-	
휴양시설		65	65	-	-	6	
유희시설		354	354	-	-	6	
녹 지		769	-	-	-	-	
공원시설율(%)		50.4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9.6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781	-	-	12	
기반시설	소 계		362	362	-	-	-	
	도 로		362	362	-	-	-	
휴양시설	소 계		65	65	-	-	6	
	가	휴게소	65	65	-	-	-	
	①	파고라	-	-	-	-	1	
	②	등의자	-	-	-	-	3	
	③	앉음벽	-	-	-	-	2	
유희시설	소 계		354	354	-	-	6	
	나-1	어린이놀이터-1	102	102	-	-	-	
	나-2	어린이놀이터-2	252	252	-	-	-	
	④	생활체육시설	-	-	-	-	6	
녹지	소 계		769	-	-	-	-	
	녹 지		769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02	362				
산책로	소 계			102	362				
	-	1	3.0	33	100	진입로	소3-438	소2-723	
	-	2	3.0	36	114	진입로	산책로1	소2-719	
	-	3	2.0 ~ 6.0	33	148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2	

11) 제70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70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520	1,138	-	-	14		
기반시설	소 계	272	272	-	-	-	
	도 로	200	200	-	-	-	
	광 장	72	72	-	-	-	
휴양시설	461	461	-	-	14		
유희시설	405	405	-	-	-		
녹 지	1,382	-	-	-	-		
공원시설율(%)	45.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54.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520	1,138	-	-	14	
기반시설	소 계		272	272	-	-	-	
	도 로		200	200	-	-	-	
	가-1	진입광장-1	34	34	-	-	-	
	가-2	진입광장-2	38	38	-	-	-	
휴양시설	소 계		461	461	-	-	14	
	나-1	휴게소-1	185	185	-	-	-	
	나-2	휴게소-2	53	53	-	-	-	
	나-3	휴게소-3	223	223	-	-	-	
	㉠	파고라	-	-	-	-	4	
	㉡	등의자	-	-	-	-	10	
유희시설	소 계		405	405	-	-	-	
	다	어린이놀이터	405	405	-	-	-	
녹지	소 계		1,382	-	-	-	-	
	녹 지		1,382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68	200				
산책로	소 계			68	200				
	-	1	3.0	68	20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12) 제83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49.4	1,428	-	-	22	
기반시설	소 계	482.0	482	-	-	-
	도 로	244.0	244	-	-	-
	광 장	238.0	238	-	-	-
휴양시설	338.0	338	-	-	15	
유희시설	608.0	608	-	-	7	
녹 지	1,321.4	-	-	-	-	
공원시설율(%)			51.9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8.1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49.4	1,428	-	-	22	
기반시설	소 계		482.0	482	-	-	-	
	도 로		244.0	244	-	-	-	
	가-1	진입광장-1	115.0	115	-	-	-	
	가-2	진입광장-2	123.0	123	-	-	-	
휴양시설	소 계		338.0	338	-	-	15	
	나-1	휴게소-1	96.0	96	-	-	-	
	나-2	휴게소-2	89.0	89	-	-	-	
	나-3	휴게소-3	103.0	103	-	-	-	
	나-4	휴게소-4	50.0	50	-	-	-	
	㉠	정자	-	-	-	-	1	
	㉡	파고라	-	-	-	-	2	
	㉢	등의자	-	-	-	-	10	
㉣	앉음벽	-	-	-	-	2		
유희시설	소 계		608.0	608	-	-	7	
	다	어린이놀이터	608.0	608	-	-	-	
	㉤	숫대놀이터	-	-	-	-	1	
	㉥	애벌레시소	-	-	-	-	2	
	㉦	생활체육시설	-	-	-	-	4	
녹지	소 계		1,321.4	-	-	-	-	
	녹 지		1,321.4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04	244				
산책로	소 계			104	244				
	-	1	1.5 ~ 4.0	45	110	진입로	588도	산책로2	
	-	2	3.5 ~ 6.0	12	59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	3	1.5 ~ 2.5	47	75	진입로	산책로2	591도	

13) 제84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옥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921	895	-	-	13	
기반시설	소 계	505	505	-	-	-
	도 로	368	368	-	-	-
	광 장	137	137	-	-	-
휴양시설	105	105	-	-	9	
유희시설	285	285	-	-	4	
녹 지	2,026	-	-	-	-	
공원시설율(%)	30.6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9.4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921	895	-	-	13	
기반 시설	소 계		505	505	-	-	-	
	도 로		368	368	-	-	-	
	가	진입광장	137	137	-	-	-	
휴양 시설	소 계		105	105	-	-	9	
	나	휴게소	105	105	-	-	-	
	①	파고라	-	-	-	-	1	
	②	등의자	-	-	-	-	8	
유희 시설	소 계		285	285	-	-	4	
	다	어린이놀이터	285	285	-	-	-	
	③	짚와이어	-	-	-	-	1	
	④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2,026	-	-	-	-	
	녹 지		2,02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80	368				
산책로	소 계			180	368				
	-	1	1.5 ~ 4.5	137	303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1.5	43	65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14) 제85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회현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435	1,953	-	-	37	
기반시설	소 계	892	892	-	-	-
	도 로	755	755	-	-	-
	광 장	137	137	-	-	-
휴양시설	609	609	-	-	31	
유희시설	452	452	-	-	6	
녹 지	5,482	-	-	-	-	
공원시설율(%)			26.3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73.7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435	1,953	-	-	37	
기반시설	소 계		892	892	-	-	-	
	도 로		755	755	-	-	-	
	가	진입광장	137	137	-	-	-	
휴양시설	소 계		609	609	-	-	31	
	나-1	휴게소-1	406	406	-	-	-	
	나-2	휴게소-2	203	203	-	-	-	
	㉠	파고라	-	-	-	-	5	
	㉡	등의자	-	-	-	-	26	
유희시설	소 계		452	452	-	-	6	
	다	어린이놀이터	452	452	-	-	-	
	㉢	숫대그물놀이터	-	-	-	-	1	
	㉣	짚와이어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4	
녹지	소 계		5,482	-	-	-	-	
	녹 지		5,482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총 계				406	755				
산책로	소 계			406	755				
	-	1	2.0	241	482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1.5	114	171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23	46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	4	2.0	28	56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15) 제86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숲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5,226	2,192	-	-	23		
기반시설	소 계	1,037	1,037	-	-	-	
	도 로	811	811	-	-	-	
	광 장	226	226	-	-	-	
휴양시설	762	762	-	-	17		
유희시설	393	393	-	-	6		
녹 지	3,034	-	-	-	-		
공원시설율(%)						41.9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58.1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5,226	2,192	-	-	23	
기반시설	소 계		1,037	1,037	-	-	-	
	도 로		811	811	-	-	-	
	가-1	진입광장-1	77	77	-	-	-	
	가-2	진입광장-2	37	37	-	-	-	
	가-3	진입광장-3	112	112	-	-	-	
휴양시설	소 계		762	762	-	-	17	
	나-1	휴게소-1	543	543	-	-	-	
	나-2	휴게소-2	219	219	-	-	-	
	㉠	정자	-	-	-	-	1	
	㉡	파고라	-	-	-	-	2	
㉢	등 의자	-	-	-	-	14		
유희시설	소 계		393	393	-	-	6	
	다-1	어린이놀이터-1	253	253	-	-	-	
	다-2	어린이놀이터-2	140	140	-	-	-	
	㉣	짚와이어	-	-	-	-	1	
	㉤	생활체육시설	-	-	-	-	5	
녹지	소 계		3,034	-	-	-	-	
	녹 지		3,034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75	811				
산책로	소 계			275	811				
	-	1	1.5	12	18	연결로	산책로2	어린이놀이터	
	-	2	5.0	16	80	연결로	진입광장2	산책로7	
	-	3	1.5	34	50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4	
	-	4	5.5 ~ 7.0	16	106	연결로	진입광장3	산책로7	
	-	5	1.5	65	98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6	
	-	6	5.0	35	166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5	
	-	7	3.0	97	293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4	

16) 제87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서수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367	1,258	-	-	19	
기반시설	소 계	993	993	-	-	-
	도 로	695	695	-	-	-
	광 장	298	298	-	-	-
휴양시설	265	265	-	-	19	
녹 지	2,109	-	-	-	-	
공원시설율(%)	37.4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2.6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367	1,258	-	-	19	
기반시설	소 계		993	993	-	-	-	
	도 로		695	695	-	-	-	
	가-1	진입광장-1	65	65	-	-	-	
	가-2	진입광장-2	50	50	-	-	-	
	가-3	진입광장-3	183	183	-	-	-	
휴양시설	소 계		265	265	-	-	19	
	나-1	휴게소-1	83	83	-	-	-	
	나-2	휴게소-2	88	88	-	-	-	
	나-3	휴게소-3	36	36	-	-	-	
	나-4	휴게소-4	58	58	-	-	-	
	㉠	정자	-	-	-	-	1	
	㉡	파고라	-	-	-	-	2	
	㉢	등의자	-	-	-	-	16	
녹지	소 계		2,109	-	-	-	-	
	녹 지		2,109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26	695				
산책로	소 계			226	695				
	-	1	3.0	172	515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1	
	-	2	2.5 ~ 5.3	54	18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17) 제88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성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891	975	-	-	13	
기반시설	소 계	784	784	-	-	-	
	도 로	666	666	-	-	-	
	광 장	118	118	-	-	-	
휴양시설		191	191	-	-	13	
녹 지		1,916	-	-	-	-	
공원시설율(%)		33.7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6.3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891	975	-	-	13	
기반시설	소 계		784	784	-	-	-	
	도 로		666	666	-	-	-	
	가	진입광장-1	118	118	-	-	-	
휴양시설	소 계		191	191	-	-	13	
	나	휴게소	191	191	-	-	-	
	㉠	파고라	-	-	-	-	1	
	㉡	등의자	-	-	-	-	12	
녹지	소 계		1,916	-	-	-	-	
	녹 지		1,91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총 점	비고
총 계				254	666				
산책로	소 계			254	666				
	-	1	3.0	157	473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2.0	46	93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21	41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	4	2.0	30	59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나.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 조서

1) 제30호 근린공원 (시설명 : 대야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745	2,299	-	-	15	
기반시설	소 계	1,918	-	-	-	
	도 로	1,918	-	-	-	
휴양시설	162	162	-	-	10	
운동시설	219	219	-	-	5	
녹 지	21,446	-	-	-	-	
공원시설율(%)	9.7%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90.3%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745	2,299	-	-	15	
기반시설	소 계		1,918	1,918	-	-	-	
	도 로		1,918	1,918	-	-	-	
휴양시설	소 계		162	162	-	-	10	
	①	정자	-	-	-	-	2	
	②	등의자	-	-	-	-	8	
운동시설	소 계		219	219	-	-	5	
	③	운동기구	-	-	-	-	5	
녹지	소 계		21,446	-	-	-	-	
	녹 지		21,44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64	1,918				
산책로	소 계			964	1,918				
	-	1	2.0	538	1,067	진입로 및 산책로	산월리 387-21	중로1-83	
	-	2	2.0	103	206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	
	-	3	2.0	158	31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	4	2.0	165	329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	

2) 제31호 근린공원 (시설명 : 동오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643	1,553	-	-	13	
기반시설	소 계	1,286	1,286	-	-	-	
	도 로	1,286	1,286	-	-	-	
휴양시설		117	117	-	-	8	정자, 등 의자
운동시설		150	150	-	-	5	운동기구
녹 지		14,090	-	-	-	-	
공원시설율(%)		9.9%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90.1%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643	1,553	-	-	13	
기반 시설	소 계		1,286	1,286	-	-	-	
	도 로		1,286	1,286	-	-	-	
휴양 시설	소 계		117	117	-	-	8	
	①	정자	-	-	-	-	2	
	②	등 의자	-	-	-	-	6	
운동 시설	소 계		150	150	-	-	5	
	③	운동기구	-	-	-	-	5	
녹지	소 계		14,090	-	-	-	-	
	녹 지		14,090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643	1,286				
산책로	소 계			643	1,286				
	-	1	2.0	446	891	진입로 및 산책로	산월리 470-1	산월리 470-1	
	-	2	2.0	131	261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66	134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3) 제32호 근린공원 (시설명 : 장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989	2,408	-	-	21	
기반시설	소 계	1,934	1,934	-	-	-
	도 로	1,934	1,934	-	-	-
휴양시설	166	166	-	-	13	정자, 등 의자
운동시설	308	308	-	-	8	운동기구
녹 지	21,581	-	-	-	-	
공원시설율(%)	10.0%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90.0%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989	2,408	-	-	21	
기반 시설	소 계		1,934	1,934	-	-	-	
	도 로		1,934	1,934	-	-	-	
휴양 시설	소 계		166	166	-	-	13	
	①	정자	-	-	-	-	1	
	②	등의자	-	-	-	-	12	
운동 시설	소 계		308	308	-	-	8	
	③	운동기구	-	-	-	-	8	
녹지	소 계		21,581	-	-	-	-	
	녹 지		21,581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70	1,934				
산책로	소 계			970	1,934				
	-	1	2.0	468	932	진입로 및 산책로	산책로5	통사리 128-2	
	-	2	2.0	144	287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	
	-	3	2.0	90	18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2	
	-	4	2.0	175	349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	5	2.0	93	186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4) 제33호 근린공원 (시설명 : 임피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6,708	10,208	123	-	35	
기반시설	소 계	3,585	-	-	-	
	도 로	3,585	-	-	-	산책로
조경시설	2,990	2,990	-	-	-	잔디마당
휴양시설	465	465	-	-	14	정자, 등 의자
운동시설	1,751	1,751	-	-	21	운동기구, 농구대
교양시설	637	637	65	-	-	가벽
편익시설	780	780	58	-	-	주차장, 화장실
녹 지	66,500	-	-	-	-	
공원시설율(%)	13.3%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86.7%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6,708	10,208	123	-	35	
기반시설	소 계		3,585	3,585	-	-	-	
	도 로		3,585	3,585	-	-	-	산책로
조경시설	소 계		2,990	2,990	-	-	-	
	가	잔디마당	2,990	2,990	-	-	-	
휴양시설	소 계		465	465	-	-	14	
	㉠	정자	-	-	-	-	4	
	㉡	등의자	-	-	-	-	10	
운동시설	소 계		1,751	1,751	-	-	21	
	나	게이트볼장	594	594	-	-	-	
	다	농구장	342	342	-	-	1	
	㉢	운동기구	815	815	-	-	20	
교양시설	소 계		637	637	65	-	-	
	라	가 벽	637	637	65	-	-	
편익시설	소 계		780	780	58	-	-	
	마	주차장	722	722	-	-	-	25면
	㉣	화장실	58	58	58	-	-	
녹지	소 계		66,500	-	-	-	-	
	녹 지		66,500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797	3,585				
산책로	소 계			1,797	3,585				
	-	1	2.0	225	450	진입로 및 산책로	읍내리 산39-2	산책로2	
	-	2	2.0	308	616	산책로	축산리 345-9	읍내리 543-3	
	-	3	2.0	526	1,046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	
	-	4	2.0	149	297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	
	-	5	2.0	7	15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4	
	-	6	2.0	147	293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2	
	-	7	2.0	81	161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2	
	-	8	2.0	32	63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2	
	-	9	2.0	322	644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3.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실음생략

※ 관련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및

산림녹지과(☎063-454-29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5-12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25외 1개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25, 소로3-629)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70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임피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시설(취락지구:도로)사업
 - 나. 명 칭 : 임피 대흥교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최초 결정일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당초	도로	중로 2-1	15	441	8	22	186	전북고15 (1983.1.29)
		소로 3-1	6	370	6	77	479	
변경	도로	중로 2-125	15	441	8	22	186	군산고81 (2010.7.15)
		소로 3-629	6	370	6	77	479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호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대표 선성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07. 10. ~ 2015. 8. 31
 변경 2007. 10. ~ 2017. 8.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가.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 나. 무상양여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중로2-125호선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51	국)재정경제부	-			
2	470-1 3	전	106	89	국)재정경제부	-			
3	647	도	9,849	46	국)건설교통부	-			
합계		3필	10,808	186					

○ 소로3-629호선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136	국)재정경제부	-			
2	470-2 1	전	77	77	최향란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	이정희 이정희	근저당 지상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3	470-2 3	임	266	266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군산시 나운동 825-7			
합계		3필	1,196	479					

군산시 고시 제 2015-126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01.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3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144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시외자동차정류장) 공사완료 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외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614-1번지의외 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 나. 명 칭 : 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결정 (㎡)	실시계획 (㎡)	건축변경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자동차 정류장	시외자동차 정류장	9,940.8	7,923.6	건축면적	건축면적	금회증축 173.55㎡ (소매점)
				957.17	1,130.72	
				연 면 적	연 면 적	
				1,200.47	1,374.02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군산시 경암동 614-2번지
 - 나. 성 명 : (주)군산공용버스정류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2. 11. 30. ~ 2015. 9. 15.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